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19가합39041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 김한솔, 김소연

피고화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박찬민, 고운형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최영

변론 종결2023. 5. 25.

판결 선고2023.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393,387원 및 그중 579,727,934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766,665,453원에 대하여는 2021. 9. 4.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0,155,653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29,155,653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이 사건 2022.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 1) 피고는 2011. 4. 12. B 조성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내역입찰 및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 2)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원고 51%, C 49%, 이하 위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2. 6. 7. 피고와 계약금액 19,290,750,000원,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한 총괄계약 및 계약금액 5,918,803,000원(총공사부기금액 19,290,750,000원), 공사기간 2012. 6. 14.부터 2012. 12. 10.까지로 한 1차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은 '○차수 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이 수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2 각 변경 내역 기재와 같다.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등

- 1) 원고는 2016. 4. 28. 피고를 상대로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등을 구하는 취지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6. 24. 피고로부터 1차수 계약에 대한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2., 2019. 4. 25., 2019. 7. 8., 2019. 8. 14., 2019. 9. 6. 피고를 상대로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3, 4, 6차수 계약에 대한 준공대가는 수령하지 않았다.

마. 관련 법령 등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지방계약법(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 발주기관은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사" 전단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사"부터 "자"까지를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6. 준공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내지 26,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2. 12. 11.부터 2016. 4. 29.까지 총 1,236일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1,159,321,259원(= 전체 간접공사비 2,273,178,940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위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① 2012. 12. 11.부터 2014. 5. 28.까지 534일, ② 2014. 12. 25.부터 2015. 4. 9.까지 106일, ③ 2016. 3. 10.부터 2016. 4. 3.까지 25일로,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④ 2017. 3. 16.부터 2017. 3. 27.까지 12일로 총 677일 동안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592,597,631원(= 전체 간접공사비 1,161,956,140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3, 4,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명시적 일부 청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3, 4,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중 일부청구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인 ① 2016. 12. 16.부터 2017. 3. 19.까지 94일, ② 2017. 11. 23.부터 2018. 3. 25.까지 123일, ③

2018. 12. 1.부터 2019. 3. 31.까지 121일, ④ 2019. 11. 9.부터 2020. 4. 26.까지 170일, ⑤ 2020. 12. 1.부터 2021. 4. 11.까지 132일, 총 640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557,443,609원(= 전체 간접공사비 1,093,026,686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화물삭도 및 인력삭도 운영과 해체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 ① 2017. 11. 23.부터 2018. 3. 26.까지 123일, ② 2018. 12. 1.부터 2019. 4. 1.까지 121일, ③ 2019. 12. 1.부터 2020. 4. 27.까지 148일, 총 392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로 512,544,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397,542원(= 위 512,544,200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장된 공사기간의 특정 원고는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2. 12. 11.부터 2016. 4. 29.까지 총 1,236일 연장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구하고(주위적 주장), 설령 위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① 2012. 12. 11.부터 2014. 5. 28.까지 534일, ② 2014. 12. 25.부터 2015. 4. 9.까지 106일, ③ 2016. 3. 10.부터 2016. 4. 3.까지 25일로,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④ 2017. 3. 16.부터 2017. 3. 27.까지 12일로 총 677일 연장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구하고 있다(예비적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부분은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구하고 있고, 그 금액도 공사의 내용이 아닌 공사기간에 주로 비례하여 산정되는바,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면 간접공사비의 속성상 추가 간접공사비는 연장한 공사기간에 대응하여 모든 공사에 공통으로 발생할 뿐, 각 차수별 공사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첩된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간접공사비가 차회 차수별 계약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간접공사비가 차회 차수별

계약에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당해 차수별 계약에서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중첩된 기간에 관한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2. 12. 10.까지에서 2016. 4. 29.까지로 총 1,236일 연장되었고, 위 연장된 공사기간 중 2014. 5. 29.부터 2014. 12. 24.까지는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2015. 4. 10.부터 2016. 3. 9.까지는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2016. 4. 4.부터 2016. 4. 29.까지는 4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각 중첩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감정인 E의 감정 결과(2021. 6. 21.자 감정 결과, 2021. 12. 17.자 추가감정 결과 및 2022. 8. 31.자 추가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으로는 위 중첩된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간접공사비가 2, 3, 4차수 계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위 차회 차수별 계약에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1차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부분은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그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공사기간은 ① 2012. 12. 11.부터 2014. 5. 28.까지 534일, ② 2014. 12. 25.부터 2015. 4. 9.까지 106일, ③ 2016. 3. 10.부터 2016. 4. 3.까지 25일의 합계 665일이다.

결국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2. 12. 11.부터 2016. 4. 29.까지 총 1,236일 연장됨을 전제로 이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 간접공사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하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따라 1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한 위 665일 및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7. 3. 16.부터 2017. 3. 27.까지 12일 연장된 부분, 즉 총 677일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순차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구 지방계약법 제22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 4항, 제8절

제2항에 의하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갑 제10, 11 내지 18, 38, 41 내지 5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3차수 계약의 경우, 연장된 전체 공사기간 중 원고가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그 연장 사유를 살펴본다).

1차수	최초	2012. 06. 07.	2012. 06. 14.	2012. 12. 10.	
1회변경	2014. 03. 31.	2012. 06. 14.	2014. 08. 29.	+6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536일)동절기(91일)
2회변경	2014. 04. 22.	2012. 06. 14.	2014. 08. 29.		
3회변경	2014. 07. 14.	2012. 06. 14.	2015. 03. 02.	+185일	공중 순서 변경
4회변경	2015. 02. 05.	2012. 06. 14.	2015. 03. 02.		
5회변경	2015. 03. 17.	2012. 06. 14.	2015. 06. 15.	+105일	동절기
6회변경	2015. 03. 17.	2012. 06. 14.	2015. 10. 15.	+122일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 설치흙막이공사 공중 변경(21일)되메우기 기재 및 물량 변경(57일)군 작전으로 인한 현장 출입 통제(11일)
7회변경	2015. 10. 14.	2012. 06. 14.	2016. 01. 12.	+89일	동절기
8회변경	2016. 04. 01.	2012. 06. 14.	2016. 04. 29.	+108일	동절기

1차수	최초	2012. 06. 07.	2012. 06. 14.	2012. 12. 10.	
3차수	최초	2015. 04. 08.	2015. 04. 10.	2016. 03. 09.	
1회변경	2015. 11. 24.	2015. 04. 10.	2016. 06. 06.	+89일	동절기
2회변경	2016. 04. 01.	2015. 04. 10.	2016. 09. 22.	+108일	전망대 국유림 사용허가 및 건축 허가 완료(2016. 7. 28. 공사 중지, 2017. 9. 8. 공사 재개)
3회변경	2016. 04. 27.	2015. 04. 10.	2016. 09. 22.		
4회변경	2017. 04. 26.	2015. 04. 10.	2016. 09. 22.		
	5회변경	2017. 09. 08.	2015. 04. 10.	2017. 11. 03.	+407일2)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7. 3. 16.부터 2017. 3. 27.까지 12일 연장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위 12일은 3차수 계약의 제5회 변경계약을 통해 연장된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② 원주지방법환경청은 2012. 7.경 피고를 상대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012. 7. 8. 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며, 2013. 12. 26.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최종조정안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공사 재개를 명하였다.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1차수 계약의 1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위와 같은 연장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013. 12. 30.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시설 공사 차질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4. 3. 31. 공사 재개를 명하였고, 2014. 11. 26. F 작업로 강설에 따른 차량 및 작업인력 통행 곤란, 동절기 기온 하강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5. 3. 16. 공사 재개를 명하였으며, 2015. 12. 14. 다시 동절기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6. 4. 1. 공사 재개를 명하였다. 위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1차수 계약의 1, 5, 8회 각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위와 같은 연장 사유도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피고가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입찰자가 단가 등을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입찰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피고가 설계서 작성·수정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공종을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공종 변경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1차수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연장 사유 역시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당초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는 화물삭도 설치공사, 종점부 토목공사, 철탑기초 및 사면 안정공사로 구성하되, 토목공사를 주공정으로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화물삭도를 설치한 후 공사용 자재들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다른 공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4. 30.경 피고에게 건축공사를 주공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종 순서를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조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2014. 5. 19.경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공종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1차수 계약의 3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비무장지대 내 해발 1,000m를 상회하는 산악 지형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의 설치가 필요하였음에도, 최초 설계는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의 설치 없이 화물삭도만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1. 26.경 피고에게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2015. 2. 6.경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이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의 설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1차수 계약의 6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⑤ 위 ㉠, ㉡항에서 본 것처럼 공종 순서가 현장 상황에 부합하도록 조정·변경됨에 따라, 흙막이공사 공종 변경으로 21일 동안, 되메우기 기재 및 물량 변경 등으로 57일 동안 공사의 지연사유가 발생하였다. 또한, 군 작전으로 인한 현장 출입 통제로 인하여 11일 동안 공사의 지연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9. 17.경. 및 2015. 9. 3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2015. 10. 8.경 이를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하여, 1차수 계약의 7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016. 7. 28. 3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의 주요 공정인 전망대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취득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며, 2017. 9. 6. 전망대 국유림 사용허가 및 건축 허가가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2017. 9. 8.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을 명하였다. 3차수 계약의 1, 2, 5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데에는 위와 같이 관련 인·허가 등 취득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연장 사유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1, 3차수 계약의 준공기일을 변경하여 왔다.

⑧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종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발생할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4. 4. 30.자 공종 변경 승인 요청 공문(갑 제46호증), 2015. 9. 30.자 공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 공문(을 제2호증의 2), 2016. 4. 28.자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갑 제19호증) 등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

(1)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참조).

(2)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8. 피고에게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위 공문을 통해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 및 연장된 공사기간을 특정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략적인 금액만을 청구하되, 추후 실투입비용 관련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는 2016. 6. 24.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2016. 4. 28.자 공문의 형식과 내용,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6. 4. 28. 피고에게 위 공문을 통해 1차수 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6. 4. 28.자 공문은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에 대해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일 뿐, 원고가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조정신청 단계에서 증액되어야 할 간접공사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2016. 4. 28.자 공문에서 대략적인 비용만을 청구하되 추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수 계약에 관한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갑 제40, 54, 56 내지 61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와 아울러 나머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던 사실(이 사건 소장 제16면 참고),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22. 3. 16.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3,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재차 분명하게 요청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3차수 계약과 관련하여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정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22. 8.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지급된 기성금 등을 3, 4,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등으로 정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소장의 형식과 내용,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3, 4,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는 2022. 8.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을 통해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이 사건 소장을 통해 1차수 계약뿐만 아니라 3차수 계약을 포함한 나머지 차수별 계약에 관하여도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는 3차수 계약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취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3차수 계약의 기성금을 최종 지급한

시점인 2021. 8. 20.경 3차수 계약의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는 늦어도 2022. 1.경에는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정산에 관한 합의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요구하는 취지는 준공대가 지급에 따른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공대가 지급 전에 해당 차수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는 수급인의 의사가 발주자에게 명확히 표시되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일반조건도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할 것을 정하면서도 그 신청의 형식,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22. 1.경 공문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3차수 계약의 공사대금 처리 방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이후 2022. 8.경에 이르러서야 3, 4,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등과 관련된 정산을 완료하였던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된 내역을 특정한 후 이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1차수 계약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준공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나머지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3차수 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2, 5차수 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바, 2, 5차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1, 3차수 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이상 1, 3차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고의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차수 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5,918,803,300원에서 7,378,713,320원으로 증액되었고, 위 증액된 계약금액에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가 1차수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1차수 계약의 1, 3, 5, 7, 8회 변경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점, ③ 1차수 계약의 2, 4, 6, 9회 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된 계약금액이 각 연장된 공사기간에 비례하여 증액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수 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 설치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1차수 계약의 3회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증액하였고, 위 증액된 계약금액에는 인력 수송용 가설삭도 설치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 하는 점, ②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산정방식 역시 차이가 있는 점, ③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되어 증액된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가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간접공사비의 조정 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계변경에 따라 1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범위 가) 간접공사비의 산정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① 2012. 12.

11.부터 2014. 5. 28.까지 534일, ② 2014. 12. 25.부터 2015. 4. 9.까지 106일, ③ 2016. 3.

10.부터 2016. 4. 3.까지 25일로 총 665일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146,166,249원(= 원고의 추가 간접공사비 945,242,414원 + C의 추가 간접공사비

200,923,835원)이고,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④ 2017. 3. 16.부터 2017. 3. 27.까지 12일로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5,789,891원(= 원고의 추가 간접공사비

12,729,002원 + C의 추가 간접공사비 3,060,8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725,958,171	191,666,951	27,617,292	945,242,414	12,729,002	957,971,416
C	139,869,189	47,463,513	13,591,133	200,923,835	3,060,889	203,984,724
합계	865,827,360	239,130,464	41,208,425	1,146,166,249	15,789,891	1,161,956,140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C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인 원고가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6. 4. 28. 피고에게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들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설령 C이 피고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C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공사기간 중 2012. 12. 11.부터 2014. 3. 30.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으므로, 위 기간은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투입인원을 현장소장 1인으로 한정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사가 재개된 2014. 3. 3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정 투입인원을 현장소장 1인, 품질관리인력 1인으로 한정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2012. 4. 2. 시행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4장 제3절에 의하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적정 투입인원을 상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인원을 간접노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취지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비 등을 보전해 주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투입된 간접노무인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③ 감정인 E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간접노무인원에 관하여 경력증명서, 급여지급 관련 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토대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점, ④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 및 공사가 재개된 이후로도 불필요한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공사 현장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이 사건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투입인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최초 19,290,750,000원에서 26,923,164,800원으로 증액되었는바,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증액 내역 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앞서 산정한 간접공사비의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위와 같이 총 655일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1,031,549,624원(= 1,146,166,249원 × 90%)이 되고,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위와 같이 12일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14,210,901원(= 15,789,891원 × 90%)이 된다.

라)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른 지급의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나 추가 간접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C은 피고로부터 준공대가, 기성대가 등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와 C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로 526,090,308원(= 1,031,549,624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로 7,247,559원(= 14,210,901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동절기 기온 하강을 이유로, ① 2016. 12. 16.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7. 3. 20.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② 2017. 11. 23.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8. 3. 26.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③ 2018. 12. 1.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9. 4. 1.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④ 2019. 11. 9.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20. 4. 27.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⑤ 2020. 12. 1.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21. 4. 11.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3차수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통해 연장된 공사기간에는 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중 일부청구로서 위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준수 여부

위 2. 나. 2)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장 제16면 참고), 이로써 원고는 3차수 계약에 관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나. 2)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6. 4. 28.자 공문(갑 제19호증) 등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동절기를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그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동절기 중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동절기 기온 하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① 2016. 12. 16.부터 2017. 3.

19.까지 94일, ② 2017. 11. 23.부터 2018. 3. 15.까지 123일, ③ 2018. 12. 1.부터 2019. 3. 31.까지 121일, ④ 2019. 11. 9.부터 2020. 4. 26.까지 170일, ⑤ 2020. 12. 1.부터 2021. 4. 11.까지 132일로 총 640일 연장된 사실, 별지2 기재와 같이 3차수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인 위 총 640일은 각 변경계약을 통해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포함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는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범위 가) 간접공사비의 산정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① 2016. 12. 16.부터 2017. 3. 19.까지 94일, ② 2017. 11. 23.부터 2018. 3. 15.까지 123일, ③ 2018. 12. 1.부터 2019. 3. 31.까지 121일, ④ 2019. 11. 9.부터 2020. 4. 26.까지 170일, ⑤ 2020. 12. 1.부터 2021. 4. 11.까지 132일로 총 640일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93,026,686원(= 원고의 추가 간접공사비 841,174,898원 + C의 추가 간접공사비 251,851,788원)이 된다.

원고	163,591,866	152,224,581	158,159,353	208,621,669	158,577,429	841,174,898
C	24,761,175	36,891,401	34,001,992	87,839,938	68,357,282	251,851,788
합계	188,353,041	189,115,982	192,161,345	296,461,607	226,934,711	1,093,026,686

그러나 위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 2017. 3. 16.부터 2017. 3. 19.까지는 위 2. 나.항에서 살펴본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정한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중첩된 공사기간은 이 부분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중첩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2016. 12. 16.부터 2017. 3. 19.까지 94일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위 표 ① 기재 부분)는 합계

188,353,041원(= 원고의 추가 간접공사비 163,591,866원 + C의 추가 간접공사비 24,761,175원)이고, 그 기간 내 일별 비용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2016. 12. 16.부터 2017. 3. 19.까지 94일에서 위 중첩된 공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6. 12. 16.부터 2017. 3. 15.까지 90일에 해당하는 추가 간접공사비를 일할계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총 636일(= 총 640일 - 중첩된 공사기간 4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85,011,662원(= 원고의 추가 간접공사비 834,213,542원 + C의 추가 간접공사비 250,798,120원)이 된다.

원고	156,630,5104) = 163,591,866원 × 90일/94일	152,224,581	158,159,353	208,621,669	158,577,429	834,213,542
C	23,707,5075) = 24,761,175원 × 90일/94일	36,891,401	34,001,992	87,839,938	68,357,282	250,798,120
합계	180,338,017	189,115,982	192,161,345	296,461,607	226,934,711	1,085,011,662

나) 간접공사비의 조정

위 2. 나.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앞서 산정한 간접공사비 1,085,011,662원의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위와 같이 총 636일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합계 976,510,495원(= 1,085,011,662원 × 90%)이 된다.

다)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른 지급의무

위 2. 나. 2)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로 498,020,352원(= 976,510,495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동절기 기온 하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었던 사실은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와 사이에 화물삭도 및 인력삭도 운영과 해체에 관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1. 12. 30. D와 사이에 동절기 기온 하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점을 반영하여 화물삭도 및 인력삭도 운영과 해체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임대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사실, 원고가 D에 이 사건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 ① 2017. 11. 23.부터 2018. 3. 26.까지 123일, ② 2018. 12. 1.부터 2019. 4. 1.까지 121일, ③ 2019. 12. 1.부터 2020. 4. 27.까지 148일의 총 392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512,544,200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2. 나. 2)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중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로 261,397,542원(= 512,544,200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설삭도의 동절기 운영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D와 임의로 변경합의를 체결한 후 이를 이 부분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삭도의 동절기 운영 비용에 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로 합계 1,292,755,761원(=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26,090,308원 +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7,247,559원 +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498,020,352원 +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원고가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261,397,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① 2012. 7. 8.부터 2013. 12. 25.까지 536일, ②

2013. 12. 30.부터 2014. 3. 30.까지 91일, ③ 2014. 12. 1.부터 2015. 3. 15.까지 105일, ④ 2015. 12. 15.부터 2016. 3. 31.까지 108일 총 840일 동안 중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 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손해비용 상당액 151,993,243원(= 총 금융손해비용 298,025,967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지연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 라.목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에 해당하고, 이는 수급인이 잔여 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5다230587 판결 등 참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2012. 7. 8.부터 2013. 12. 25.까지 536일)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이 2012. 7.경 피고를 상대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012. 7. 8. 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하였으며, 2013. 12. 26.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최종조정안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2, 13, 16조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고, 그 협의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인 피고의 책임 영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536일 동안 중지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나머지 304일)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동절기 기온 하강을 이유로, ① 2013. 12. 30.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4. 3. 31.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② 2014. 12. 1.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5. 3. 16.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 ③ 2015. 12. 15. 공사 중지를 명하였다가 2016. 4. 1. 공사 재개를 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지시한 것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부실공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인사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급인을 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절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총 304일 동안 중지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연보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지연보상금의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기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 라.목에 따라 산정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2012. 7. 8.부터 2013. 12. 25.까지 총 536일 동안 중지된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 라.목에 따른 금융손해비용을 산정하면 총 210,343,635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지연보상금의 조정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 라.목에 따른 약정은 발주기관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정기간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그 후 재개되어 완공된 경우 계약상대자인 원고가 잔여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사의 일시 중지는 필연적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추가 간접공사비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피고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산정한 지연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50% 감액하여

105,171,817원(= 210,343,635원 × 50%)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위 2. 나. 2) 라)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으로 53,637,626원(= 105,171,817원 × 원고의 지분비율 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인용금액의 정리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1,292,755,761원(=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26,090,308원 +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7,247,559원 +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498,020,352원 +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원고가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261,397,542원)과 이 사건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53,637,626원의 합계 1,346,393,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가) 일반원칙

(1) 추가 간접공사비 등의 조정금액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조정금액에 관한 지급기한을 정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사기간의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9절 6항에 따른 준공대가의 지급기한과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 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기한이 모두 도래한 날(즉, 위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6항 라.목은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6. 4. 28.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6. 6. 24. 1차수 계약에 대한 준공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의 인용금액 중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26,090,308원 및 1차수 계약의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53,637,626원의 합계 579,727,934원의 경우, 준공대가 지급기한 및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기한이 2021. 9. 3.인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의무기한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3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1. 29.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의 인용금액 중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7,247,559원,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498,020,352원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원고가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261,397,542원의 합계 766,665,453원의 경우, 준공대가 지급 기한과 계약금액 조정 의무기한이 모두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46,393,387원 및 그중 579,727,934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나머지 766,665,453원에 대하여는 2021. 9. 4.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행지체로 4, 6차수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는 불가피하게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기간을 총 2차례 연장함에 따라 235,600,000원의 용역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4, 56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2022. 8.경 3, 4, 6차수 계약의 잔여 준공대가 등에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 정산금, 지연배상금 등을 상계하는 방식의 정산 합의를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8. 29. 피고로부터 정산금 216,454,96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2. 8.경 4, 6차수 계약의 지연배상금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완료한 후 이에 따라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 6차수 계약의 지연배상금으로 235,6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진웅

판사이유섭

판사백송이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2022.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로 2,130,155,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1,563,432,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위적 청구금액 2,130,155,653원은 ①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1,159,321,259원, ② 3, 4,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557,443,609원, ③ 원고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D에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261,397,542원, ④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151,993,243원의 합계이고, 위 예비적 청구금액 1,563,432,025원은 위 ① 기재 청구와 관련하여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592,597,631원으로 감축하여 구한다는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금액과 동일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금액의 차이가 있는 위 ① 기재 청구의 경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사실상 청구원인이 동일하나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장된 공사기간만을 달리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위적 예비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하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1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중 다른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과 중첩되는 부분을 간접공사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특정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7. 3. 16.부터 2017. 3. 27.까지 12일 연장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위 12일은 3차수 계약의 제5회 변경계약을 통해 연장된 공사기간에 포함된다.

3) 원고는 3, 4,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각 차수별 계약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된 공사기간은 3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모두 포함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4,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 163,591,866\text{원} \times 90\text{일}/94\text{일}$$

$$5) = 24,761,175\text{원} \times 90\text{일}/94\text{일}$$